이혼및친권자지정(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)

[전주지방법원 2016. 10. 4. 2016드단1857]



【판시사항】

【판결요지】

【참조조문】

【참조판례】

【전문】

【문서소지인】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【약식결정일】2016. 9. 5.

【주문】

1

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,000,000원에 처한다.

[이유]

】이 법원의 2016. 8. 23.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. 8. 26.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, 제318조,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판사 허윤범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